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48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III. 검토의견	3
1. 자회사등의 별도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3
2.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정기점검 의무화	7
3.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관리 결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보고 ...	12
4. 업권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통일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정문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2024. 10. 2.
3. 회 부 일: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나.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24조제3항 · 제4항).

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라.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 제4항).

Ⅲ. 검토의견

1. 자회사등의 별도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¹⁾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²⁾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생략)	제24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	<삭제>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 금융지주회사 현황은 【참고자료 1】 금융지주회사 현황 참조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 포함)를 말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인가의 기준) ① (생략)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현행	개정안
<u>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생략)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³⁾ 제24조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즉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음⁴⁾.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27조는 금융회사가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즉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⁵⁾⁶⁾.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 자회사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⁷⁾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등을 마련시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등 마련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각 자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43조제1항제16호 또는 제21호).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전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2015. 7. 31.) 당시 정부제출안은 해당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 그러나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그룹 전체를 통괄하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규정으로 추가되었음.

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각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와 별도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회사등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5대 금융지주의 경우 각 자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합하여 마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⁸⁾, 특례를 삭제하더라도 실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의 시너지 효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전체를 통괄하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지배구조법 제정안 정무위 심사보고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의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간 임원직원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데다,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자회사등 간의 업무위탁범위가 확대되고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금융자회사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 방식의 대형화겸업화가 추진될수록 위험의 전이 또는 집중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상충의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그룹의 건진성 유지 등을 위하여 자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지주회사 그룹 전체를 통괄하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대상에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제출 요구와 관련하여서도 요구대상에 “자회사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32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13. 12. 18.) 회의록 참조.

8)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2.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정기점검 의무화

-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 부분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②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제24조(내부통제기준 등) ①·② (생략) ③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 부분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우리나라는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⁹⁾ 및 시행령¹⁰⁾에서 금융회사로 하여

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

금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¹¹⁾).

- 세계화와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성이 증가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이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이라는 형식적 의무만을 부과할 뿐 실질적인 내부통제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서 현행 규율이 금융회사 구성원에게 형식적·절차적 의

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1) 그 외에,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인 위험관리기준(넓은 의미의 내부통제의 범위에 포함)을 마련할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음.

무로 인식되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 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억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8.	누적
횡령·유용	111	143	228	897	626	2,005
업무상배임	282	167	219	233	142	1,043
사 기	4,106	1,085	315	1,207	125	6,838
기 타	4	27	67	171	16	285
소 계	4,503	1,422	829	2,508	909	10,171

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상 금전사고로서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사고금액' 및 '보고접수일'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 또한, 최근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사건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리고 있어¹²⁾,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12) 2020년 3월,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에 관련하여 내부통제 관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前우리는행장과 前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각 당사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각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달리 판결하였음.

- 前우리는행장 판결: 하급심은 前우리는행장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이지만,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내부통제 기준 자체가 만들어진 이상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함(2022. 12. 15.).
- 前하나은행장 판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前하나은행장이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이며, 내부통제 마련 과정에서 설정한 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형식적인 상태에 머무른다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前하나은행장은 이에 즉각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前하나은행장이 승소하여 문책경고 처분이 취소되었음.

에 있는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¹³⁾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2023년 12월 동법이 개정¹⁴⁾되어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은 소관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기준 등이 충실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1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5호, 2022. 12. 22. 일부개정)_2024. 6. 26.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④ 지점장(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관련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

2.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가.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4.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 2024. 6. 26. 감독규정 개정시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은 삭제되었음.

14) <주요 개정 내용>

①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② 각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내 각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할 임원을 지정한 문서인 책무구조도 도입

③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임원 등에 대한 제재 및 제재 감면 근거 마련

④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의 역할 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제30조의2, 제30조의4¹⁵⁾) 별도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정기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이하 생략)

※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 위반시 해당 임원이나 대표이사등에 대해 제35조에 따른 제재조치(해임요구, 주의, 면직 등)가 가능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가 가능함(법 제35조의2)

3.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관리 결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보고

☐ 개정안은 위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u>두어야 한다</u>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 ----- ----- ----- ----- ----- <u>두어야</u> <u>하며, 위험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¹⁶⁾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함¹⁷⁾.

16) 금융회사가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과정을 의미함(「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 현행 법령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및 겸직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관리 결과의 보고에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¹⁸⁾.

□ 이에 개정안은 위험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험관리 결과가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회계감독, 경영진 업무집행 감독, 부정행위 적발 및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될

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 있도록 하여 위험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업권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통일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산되어 업권별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는</u> <u>마목에</u> <u>따른</u> <u>금융회사에</u> <u>대해서</u> <u>는</u> <u>금융감독원장의</u> <u>건의에</u> <u>따라</u> <u>제</u> <u>1항</u> <u>각</u> <u>호의</u> <u>어느</u> <u>하나에</u> <u>해당하는</u> <u>조치를</u> <u>하거나</u>, <u>금융감독원장으로</u> <u>하여금</u> <u>제1항제3호</u> <u>또는</u> <u>제4호의</u> <u>어느</u> <u>하나에</u> <u>해당하는</u> <u>조치를</u> <u>하게</u> <u>할 수 있다.</u>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 ② (생략)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u> <u>가목, 다목 및 마목에</u> <u>따른</u> <u>금융회사</u> <u>의 임원에</u> <u>대해서는</u> <u>다음 각 호에서</u> <u>정하는 바에</u> <u>따른다.</u> 1. <u>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u> <u>따른</u> <u>금융회사의 임원에</u> <u>대해서는</u> <u>금융감독원장의</u> <u>건의에</u> <u>따라</u> <u>제1항</u> <u>제1호</u> <u>또는</u> <u>제2호의</u> <u>어느</u> <u>하나에</u> <u>해당하는</u> <u>조치를</u> <u>할 수 있으며</u>, <u>금</u> <u>융감독원장으로</u> <u>하여금</u> <u>제1항제3호</u> <u>부터</u> <u>제5호까지의</u> <u>어느</u> <u>하나에</u> <u>해</u> <u>당하는</u> <u>조치를</u> <u>하게</u> <u>할 수 있다.</u> 2. <u>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u> <u>는</u> <u>마목에</u> <u>따른</u> <u>금융회사의 임원에</u> <u>대해서는</u> <u>금융감독원장의</u> <u>건의에</u> <u>따라</u> <u>제1항</u> <u>각</u> <u>호의</u> <u>어느</u> <u>하나에</u> <u>해당하는</u> <u>조치를</u> <u>하거나</u>, <u>금융감독</u> <u>원장으로</u> <u>하여금</u> <u>제1항제3호부터</u> <u>제5호까지의</u> <u>어느</u> <u>하나에</u> <u>해당하는</u>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u> <u>가목, 다목 및 마목에</u> <u>따른</u> <u>금융회사</u> <u>의 임원이</u> <u>별표</u> <u>각</u> <u>호의</u> <u>어느</u> <u>하나</u> <u>에</u> <u>해당하는</u> <u>경우</u> <u>금융위원회는</u> <u>금</u> <u>융감독원장의</u> <u>건의에</u> <u>따라</u> <u>제1항</u> <u>각</u> <u>호의</u> <u>어느</u> <u>하나에</u> <u>해당하는</u> <u>조치를</u> <u>하거나</u>, <u>금융감독원장으로</u> <u>하여금</u> <u>제</u> <u>1항제3호부터</u> <u>제5호까지의</u> <u>어느</u> <u>하</u> <u>나에</u> <u>해당하는</u> <u>조치를</u> <u>하게</u> <u>할 수</u> <u>있다.</u>

현행	개정안
<u>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u>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 조치 중 먼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¹⁹⁾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①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②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③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④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⑤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법 제34조

19)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별표]의 내용은 【참고자료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참조.

제1항 각 호)20)로 구분됨.

□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위의 5가지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재 권한을 분담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①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및 ⑤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②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③ 경고 또는 ④ 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5가지 제재 조치를 직접 하거나, 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③ 경고 또는 ④ 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 또는 통보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구분 (법 제34조) >

구 분 최종 행위주체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위	①시정명령,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⑤기타 조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시정명령, ⑤기타조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시정명령,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⑤기타 조치
금감원	-	(금융위 요구로)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금융위 요구로) ③경고, ④주의

□ 다음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임원 또는 직원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²¹⁾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① 해임요구, ②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 조치로 구분되고, 직원에 대해서는 ① 면직, ② 6개월 이내의 정직, ③ 감봉, ④ 견책, ⑤ 주의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²²⁾.

□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의 경우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5가지 제재 조치를 직접 하거나 직원에 대해서는 5가지 제재 조치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

21)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별표]의 내용은 【참고자료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참조.

22) 현행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하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게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임.

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재 권한을 분담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먼저 은행의 임원에 대해서는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① 해임요구 또는 ② 직무정지 등을 할 수 있고, 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또는 ⑤ 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금융위원회가 5가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또는 ⑤ 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은행의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5가지 제재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5가지 제재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에 5가지 제재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조치 구분 (법 제35조) >

제재 대상	최종 행위 주체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금융위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등,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등,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감원	-	(금융위 요구로)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융위 요구로)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직원	금융위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금감원	-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금융위 요구로)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 이와 같이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행사하되, 은행,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재 조치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는데, 대체로 비교적 가벼운 제재 조치는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권한 배분이 복잡할 뿐 아니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도 함.

□ 이에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

를 하되, 2) 비교적 가벼운 제재 조치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가 1)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섯 가지 제재 조치를 직접 하거나 2)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②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③ 경고 또는 ④ 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1)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섯 가지 제재 조치를 직접 하거나, 2)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또는 ⑤ 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섯 가지 제재 조치를 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2)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제재조치 변경 >

구 분	최종 행위 주체	현 행		개정안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 회사	금융위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시정명령, ⑤기타조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시정명령,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⑤기타 조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시정명령,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⑤기타 조치
	금감원	(금융위 요구로)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금융위 요구로) ③경고, ④주의	(금융위 요구로)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임원	금융위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등,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등,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감원	(금융위 요구로)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융위 요구로)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융위 요구로)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직원	금융위	< 신 설 >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금감원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금융위 요구로)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금융위 요구로) 금융회사에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처분 요구

□ 개정안은 은행,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된 제재조치 권한 분담체계를 통일하여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제재 권한 배분은 「은행법」,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업권별 금융회사 및 임직원²³⁾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²³⁾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제재 권한을 개정하는 경우, 각 개별법과 상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나,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업권별 제재권한 배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유지되어 온 사항으로, 제재행정의 책임성·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3)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감독)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1】 금융지주회사 현황 (2024. 9. 기준)

상호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양종희 (‘23.11.~’26.11.)	진옥동 (‘23.3.~’26.3.)	함영주 (‘22.3.~’25.3.)	임종룡 (‘23.3.~’26.3.)	이석준 (‘23.1.~’24.12.)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8.21 %	국민연금공단8.22 %	국민연금공단8.85 %	우리사주조합 외 8.74%	농협중앙회 100%
임직원총수 (연결기준)	52,536명	30,115명	21,693명	27,786명	23,404명
총자산 (연결기준)	745.3조원	745.4조원	625.6조원	543.7조원	550.8조원
당기순이익 (연결기준)	4조 3,953억원	4조 441억원	3조 2,254억원	2조 6,599억원	2조 3,151억원
자회사	【자회사 11개】 ① 국민은행 ② KB증권 ③ KB손해보험 ④ KB국민카드 ⑤ KB라이프생명 ⑥ KB자산운용 ⑦ KB캐피탈 ⑧ KB저축은행 ⑨ KB부동산신탁 ⑩ KB인베스트먼트 ⑪ KB데이터시스템 【손자 이하 52개】	【자회사 15개】 ① 신한은행 ② 신한카드 ③ 신한투자증권 ④ 신한라이프 ⑤ 신한캐피탈 ⑥ 제주은행 ⑦ 신한자산운용 ⑧ 신한디에스 ⑨ 신한펀드파트너스 ⑩ 신한저축은행 ⑪ 신한자산신탁 ⑫ SHC매니지먼트 ⑬ 신한리츠운용 ⑭ 신한벤처투자 ⑮ 신한EZ손해보험 【손자 이하 34개】	【자회사 14개】 ① 하나은행 ② 하나증권 ③ 하나금융티아이 ④ 하나캐피탈 ⑤ 하나생명보험 ⑥ 하나손해보험 ⑦ 하나자산신탁 ⑧ 하나저축은행 ⑨ 하나카드 ⑩ 하나펀드서비스 ⑪ 하나대체투자자 산운용 ⑫ 핀크 ⑬ 하나벤처스 ⑭ 하나에프앤아이 【손자 이하 32개】	【자회사 14개】 ① 우리은행 ② 우리카드 ③ 우리금융캐피탈 ④ 우리종합금융 ⑤ 우리자산신탁 ⑥ 우리금융저축은행 ⑦ 우리자산운용 ⑧ 우리금융에프앤아이 ⑨ 우리금융정보 ⑩ 우리펀드서비스 ⑪ 우리프라이빗 에쿼티 자산운용 ⑫ 우리에프아이에스 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⑭ 우리벤처파트너스 【손자 이하 21개】	【자회사 9개】 ① NH농협은행 ② NH농협생명 ③ NH농협손해보험 ④ NH투자증권 ⑤ NH-Amundi자산 운용 ⑥ NH농협캐피탈 ⑦ NH저축은행 ⑧ NH농협리츠운용 ⑨ NH벤처투자 【손자 이하 29개】
상 호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황병우 (‘24.3.~’27.3.)	빈대인 (‘23.3.~’26.3.)	김기홍 (19.3.~’25.3.)	김남구 (‘3.1.~’26.3.)	김용범 (‘14.3.~’26.3.)
최대주주	(주)오케이저축은행 9.55% (‘24.4.5.)	부산롯데호텔 외 10.47%	삼양사 외 14.75%	김남구 외 21.3%	조정호 외 51.54%
임직원총수 (연결기준)	5,909명	7,835명	4,635명	4,837명	4,852명
총자산 (연결기준)	95.6조원	150.9조원	65.5조원	102.3조원	111.9조원
당기순이익 (연결기준)	2,526억원	7,051억원	5,631억원	9,336억원	1조 9,658억원
자회사	【자회사 11개】 ① iM뱅크 ② 하이투자증권 ③ iM라이프생명보험 ④ iM캐피탈 ⑤ iM에셋자산운용 ⑥ iM유페이 ⑦ iM데이터시스템 ⑧ iM신용정보 ⑨ iM투자파트너스 ⑩ 뉴지스탁 ⑪ ASSET MANAGEMENT ASIA PTE.LTD. 【손자 이하 5개】	【자회사 9개】 ① 부산은행 ② 경남은행 ③ BNK캐피탈 ④ BNK투자증권 ⑤ BNK저축은행 ⑥ BNK자산운용 ⑦ BNK벤처투자 ⑧ BNK신용정보 ⑨ BNK시스템 【손자 이하 6개】	【자회사 5개】 ① 전북은행 ② 광주은행 ③ JB우리캐피탈 ④ JB자산운용 ⑤ JB인베스트먼트 【손자 이하 4개】	【자회사 10개】 ① 한국투자증권 ② 한국투자파트너스 ③ 한국투자저축은행 ④ 한국투자캐피탈 ⑤ 한국투자프라이빗 에쿼티 ⑥ 한국투자부동산신탁 ⑦ 한국투자벤처파트너스 ⑧ KIARA CAPITAL II ⑨ KIARA ADVISORS ⑩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손자 이하 48개】	【자회사 3개】 ① 메리츠화재 ② 메리츠증권 ③ 메리츠대체투자 운용 【손자 이하 2개】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참고자료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 제5조를 위반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조를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사실을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한 경우
7.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8.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겸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9. 제11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12조를 위반하여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를 한 경우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13.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제16조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제17조를 위반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18. 제19조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제20조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제21조를 위반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2.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체계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 23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4.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27.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임면 및 보수지급과 평가기준 운영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8. 제2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29. 제27조를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31.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32.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3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3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5.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35의2.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또는 변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6.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37.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정보제공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8.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3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한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104